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60

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:이해식 · 진선미 · 위성곤

신정훈 • 문진석 • 맹성규

조정훈 • 권인숙 • 김진애

이상직 · 양향자 · 박영순

박성준 · 이학영 · 남인순

이수진(비)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가격표의 게시·등록,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정수 및 구매·사용강요 금지,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 준에 따른 계약이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성립되기 쉽고,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(안 제28조의2, 제29조, 제32조 및

제42조).

법률 제 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2항 중 "교육"을 "교육,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"으로, "제5항까지, 제7항 및 제8항"을 "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-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 명하여야 한다.
- 1.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- 2. 장례의식의 내용
- 3.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
- 4.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
- 5.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
- 6.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

- 7.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
- 8.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29조제8항"을 "제29조제9항"으로 한다.

4의2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경우

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 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 호의7(종전의 제12호의6) 중 "제29조제8항"을 "제29조제9항"으로 한다.

12의6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공설장례식장의 설치·	제28조의2(공설장례식장의 설치·
운영) ① (생 략)	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	2
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, 가격표	
의 게시·등록, 게시한 가격 외	
의 금품징수 및 구매·사용강요	
금지, <u>교육</u> , 거래명세서의 발급	교육, 계약체결 전
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	정보제공
제5항까지, 제7항 및 제8항을	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
군용한다.	<u>제9항까지의 규정</u>
제29조(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)	제29조(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
	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
	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
	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
	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	1.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(법인
	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
	말한다)
	2. 장례의식의 내용
	3.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

⑧ (생 략)

- ⑨ 제4항 및 <u>제8항</u>에 따라 게 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 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 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.
- 제32조(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) ① 시장등은 장 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 <신 설>

<u>시설</u>
4.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
<u>7]</u>
5.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
6.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
7.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
<u>방법 및 시기</u>
8.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
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
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
령으로 정하는 사항
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<u>⑩</u> 제9항
제32조(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
시정명령 등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

- 5. <u>제29조제8항</u>을 위반하여 거 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
- ②·③ (생 략)
- 제4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(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)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~ 12의5. (생 략) <신 설>
 - 12의6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 자
 - 12의7. (생략)
 - 13. (생략)
 - ② (생략)

계약세결 전에 성보들 제공
하지 아니한 경우
5. 제29조제9항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과태료) ①
1. ~ 12의5. (현행과 같음)
12의6.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
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
공하지 아니한 자
<u>12의7.</u> <u>제29조제9항</u>
<u>12의8.</u> (현행 제12호의7과 같
승)
1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